

수원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규정

2001. 4. 05 제정

제1장 터전운영에 관한 사항

제1조(교사)

- ① 교사는 원장(교사대표)전일제 교사반일제 교사영양교사로 구분한다.
- ② 교사들은 원장(교사대표)의 주재하에 매주 짧은 회의를 가지며, 월 1회 긴 회의를 개최하되, 긴 회의 결과는 다음 이사회에 보고한다. <2013.1.1 개정>
- ③ 교사 1인당 아이 수는 다음과 같다. 단, 교사 1인당 아이의 수는 터전 및 교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와 교사회의 연석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3세(20개월 이상) 【 1 : 4 】
 2. 4세 【 1 : 6 】
 3. 5세 【 1 : 8 】
 4. 6세 【 1 : 10 】
 5. 7세 【 1 : 12 】

제2조(보육시간)

- ① 보육시간은 오전 7시 30분 부터 오후 7시 30분 까지로 한다.
- ② 등원하는 원아가 없어 토요일 보육을 운영하지 않는다. <2018. 11. 6.개정>
- ③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야간보육 또는 토요일 보육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 ④ 조합은 반일제 교육을 조합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제안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전체아동수의 2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보육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한다.
- ⑤ 공휴일에는 휴무한다. 다만,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터전의 시설 관리에 대해서 해당 조합원 이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터전의 놀이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 ⑥ 맞춤형 원아 보육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2018. 11. 6.개정>

제3조(급식)

- ① 아이들과 교사들의 식사를 담당할 영양교사 1인을 둔다.
- ② 식사와 간식시간은 아래와 같이 하며, 식사와 간식시간의 변경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교사회에서 결정한다.

1. 9시 30분 : 오전 간식
 2. 12시 00분 : 점심
 3. 16시 00분 : 오후 간식
- ③ 영양교사의 근무시간은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④ 식단은 영양교사가 작성하여 교사회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조(등원)

원장(대표교사)과 교사는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을 돕기 위하여 부모 또는 양육자중 보호자 1인 을 일정한 기간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터전의 관리)

- ① 터전의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가스비 등)에 대한 관리는 재정이사가 담당하며, 교사 중 1인을 선정하여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터전의 대청소는 1조씩 순번제로 돌아가며 실시하고 월 1회로 한다. 청소날짜 및 해당가구를 표시한 순번표는 이사회에서 작성하여 공고한다.
- ③ 청소와 비품정리는 교사가 담당하며, 야간 근무시에 발생하는 설거지, 청소, 비품정리 등은 야간교사가 담당한다.

제6조(비품)

- ① 식기류, 세면도구, 가구류 및 안전물품은 조합에서 비치한다.
- ② 우유는 필요시 조합에서 일괄 구매하고, 분유는 조합원이 자녀의 체질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조합에 제공한다.
- ③ 침구류는 조합원이 준비하도록 한다.
- ④ 영아방 자녀를 둔 조합원은 자녀의 이름이 표시된 수건을 준비하여 수시로 교체해 준다.
- ⑤ 영아의 기저귀는 부모가 준비하고 관리한다.
- ⑥ 젓병소독은 해당아이의 부모가 한다.

제7조(질병 및 안전사고)

- ①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 ② 안전사고 발생시 조합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해결하며, 상해보험으로도 부족한 진료비나 상해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의 상호부조로 안전사고를 당한 아이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자녀가 격리를 요하는 전염성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터전에 데려오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는 조합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병원에는 부모가 데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모가 직접 데려갈 수 없음을

원장 또는 교사에게 소명한 경우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데려갈 수 있다.

제8조(CCTV 설치 · 운영)

- ①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서면동의를 신규 반 편성월을 기준으로 받아야 함이 원칙으로한다.
- 다만, 입소 상담과정에서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보호자의 동의 여부는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이 신고 수리시 정한 기간 내에서 유효하며, 차 년도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당해 연도 입소 상담과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보호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 ⑤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폐쇄회로텔레비전의 미설치 또는 미운영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서면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정해진 서식에 의한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영구터전마련기금, 시설관리기금과 조합비 및 보육료에 관한 사항

제9조(영구터전마련기금, 시설관리기금과 조합비 및 보육료)

- ① 조합원가입 시 영구터전마련기금 50만원, 시설관리기금 50만원을 납부하며 환급되지 않는다. 단, 두 자녀 이상일 경우 각각 60만원으로 한다.<2014.7.10 개정>
- ② 조합비와 보육료는 방구성과 무관하게 아이연령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보육료는 매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제시하는 보육료 상한금액을 고려하여 기준금액 이하로 책정하고 조합비와 보육료의 결정 및 변경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한다. <2012.7.15 개정>
- ③ 조합비와 보육료의 산정은 매년 새로운 방 구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1년간 아동의 월령 증가와 관계없이 균일하게 적용한다. <2012.7.15 개정>
- ④ 조합비와 보육료는 매달 10일 이전까지 당월 조합비와 보육료를 정해진 은행계좌로 납부 한다. (미납할 경우 연체에 대한 과징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0일 이후 2만원, 30일 이후 5만원, 50일 이후 10만원)
- ⑤ 공동육아에 참여하고자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장 등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 후 첫 2개월간은 면제해주고, 3개월째는 30%, 4개월째는 40%, 5개월부터는 조합비와 보육료의 50%를 내는 조건으로 유보할 수 있다.
- ⑥ 자녀를 등원시킨 후에는 자녀의 등원과 관계없이 보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원하지 못하는 사유가 질병재해(조합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보육료의 30%를 납부하며 등원하지 않는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한다. <2012.7.15 개정>
- ⑦ 두자녀 이상을 터전에 맡기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비에서 5만원을 감면해 준다. 다만, 야간반 보육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⑧ 조합원 교사인 경우 한 자녀인 경우 10%, 두 자녀인 경우 20%를 감면해 준다.
- ⑨ 여러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유리한 것을 택해 한 가지 조건만 적용한다.
- ⑩ 조합 가입 시와 탈퇴시의 보육비는 일할 계산한다.
- ⑪ 선납한 조합비와 보육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하지 아니하며, 등원 전이라도 입학금을 납입 한 경우 환불하지 않는다.<2019.9.28 개정>
- ⑫ 조합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조합비와 보육료의 30% 한도 내에서 총회의 의결로 조합비와 보육료를 할인 해 줄 수 있다.
- ⑬ 조합비와 보육료 분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⑭ 수매선수금 운영은 조합통장에서 운영하며, 급간식비는 보육료 통장에서 나감이 원칙으로 최소한의 급한 결품만 선수금으로 결제한다.<2019.9.28. 개정>
- ⑮ 특위 편성예산은 매해 3월 결산 정기총회 때 당해 연도 사업운영 예산(안)에 포함하며, 의결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정이사는 특위장과 사전에 편성예산을 점검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한다.<2019.9.28. 개정>

제3장 조합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조합원과 교사의 의견교환)

- ① 교사와 조합원은 방모임 등을 통해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 ② 방모임 대표로 선출된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모임을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 ③ 방모임 대표는 다른 조합원으로 하여금 방모임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방모임 일지 기록부 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부모일일교사)

- ① 조합원은 부모 모두 일일교사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부모는 모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 일일교사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② 부모일일교사는 교사회의, 교사의 월차연차휴가나 교육출장 등의 경우에 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③ 부모일일교사는 원장(대표교사)과 협의하여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 ④ 부모일일교사의 근무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12조(조합원 또는 아이의 수 제한)

- ① 조합은 조합원 자녀들이 공동육아의 터전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조합원의 자녀수를 파장동(파장동 269-1번지)터전에서는 30인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구체적인 조합원 수 및 자녀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가입신청서)

조합에 신규로 가입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조합원가입신청서
2. 어린이 건강기록지
3. 어린이 생활조사(공통부분)
4. 연령별 아이 발달상황(2~18개월, 19~30개월, 31개월 이후)
5.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이사회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14조(명예조합원)

- ① 명예조합원은 공적출자금을 낸 가구로 한다.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할 권리는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은 없고 아가의 의무도 없다. 또한 나중에 재가입시 해당 연령의 자녀는 대기 0순위로 한다. 명예조합원의 결정은 해당 요건을 갖춘 가구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르고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 ② 명예조합원은 연 1회 총회를 갖는다.

제15조(대기자)

- ①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터전의 아동 수 제한 등의 사유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금액을 납부한 후 우선 가입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대기 후 가입순서가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후 순위 대기자가 총원대상이 된다.
- ③ 현 조합원의 다른 자녀가 등원을 희망할 경우 대기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갖는다.(단, 그 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제16조 (탈퇴)

-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90일전에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탈퇴사유와 시기를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소정의 금액을 출자금에서 공제하기로한다. 단,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인지의 여부는 이사회가 판단한다.

1. 탈퇴하고자 하는날로부터 1일~30일전에 통보시 3개월분 보육료 및 조합비
2. 탈퇴하고자 하는날로부터 31일~60일전에 통보시 2개월분 보육료 및 조합비
3. 탈퇴하고자 하는날로부터 61일~90일전 통보시 1개월분 보육료 및 조합비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조합을 즉각 탈퇴할 수 있다.

1. 자녀의 연령이 조합에서 정한 상한에 도달하였을 때
2. 자녀가 사망하거나 사고 혹은 질병으로 장기간의 치료 및 휴양이 필요한 때
3.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장기출장 혹은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공동육아에 참여가 불가능할 때(직장의 전근 신청 시 조합에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
4. 총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③ 자녀의 부적응의 경우 다음 절차를 거친다.

1. 부모가 이사회 또는 교사회에 공식 통보한다.
2. 90일간의 적응노력 기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합 탈퇴 이후 해당 조합 가구의 자녀는 교육활동에는 참여 할 수 없다. 단, 7세 과정 교육 일수 중 2/3 이상 출석한 아동은 졸업식 수료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18. 12. 5. 개정>

제17조(탈퇴신청서)

① 조합에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조합원탈퇴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한다.(양식 홈페이지 참조)<2019.9.28. 개정>
2. 기타 이사회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18조(신입아마 및 출산아마)

① 신입아마 조합활동 면제기준 <2019.9.28 개정>

1. 일일아마, 자투리 1개월 후 배정
2. 청소 3개월 후 배정
3. 소위 및 특위 1개월 후 배정

② 출산가구 조합활동 면제기준 <2019.9.28 개정>

1. 일일아마, 자투리아마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제
2. 청소 3개월 이내 면제
3. 총회 참석 벌금(운영규정 21조 징계)에 대한 면제는 없음

제4장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9조(소위원회)

- ①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전 조합원은 의무적으로 하나의 소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부부가 다른 소위원회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따로 가입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운영소위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기획점검하고,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항목과 방법을 정하여 매월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어린이집 1년 운영계획표를 작성한다.
3. 개원잔치, 야유회, 송별회, 환영회, 조합원 총회 등 주요행사의 기획, 준비, 진행을 총괄 한다.
4. 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 시 초안을 작성한다.
5. 부모일일교사활동 및 차량아마를 관리조정한다.
6. 먼na들이 전세버스 운영 시 달팽이 카시트 운영하며, 탈부착 아마를 배정한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카시트는 탈부착의 어려움으로 사용 지양)<2019.9.28 개정>

교육소위

1. 신입조합원 및 기존 조합원의 재교육을 담당한다.
2. 어린이집 교육내용에 대해 매월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3. 공동육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제안한다.
4. 조합원과 교사 간에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의사소통 채널의 기능을 한다.

재정소위

1. 출자금과 **영구터전마련기금, 시설관리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2.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출과 조합비와 보육료 수입을 관리한다.
3. 벌금 및 기타 조합재정을 관리한다.
4. 조합원들의 각종 회의 참석 여부를 파악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5. 급여규정 개정 시 초안을 작성한다.
5. 매월 예산안과 결산 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6. 1년 예산안과 결산 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시설소위

1. 어린이집의 시설, 위생 상태를 점검보수하고 시설과 위생에 대한 평가항목과 방법을 정하여 매월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2. 터전이 이사해야 할 경우 주택을 물색하거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주관한다.
3. 청소아마를 관리한다.
4.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한다.
5. 문구류, 장난감, 비품 등의 구입을 담당한다.
6. 조합원 주차와 관련된 제반 문제 해결을 책임진다.

홍보소위

1.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2. 조합의 대기자를 관리하며, 대기자에게 조합소식을 정기적으로 전달한다.
 3. 회의록 작성 및 각종 서식을 작성관리하며, 일지평가서조합원 신상자료 등의 기타자료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4. 조합을 대외에 홍보하는 활동을 한다.
 5. 조합 홈페이지 운영 시 이를 유지 관리한다.
 6. 컴퓨터 통신을 담당한다.
 7. 각종 홍보사업을 담당한다.
 8. 공동육아연구원에 조합자료를 전달한다.
 9. 대외협력과 연대 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10. 신규조합원 가입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 ③ 이사회는 필요시 의결을 거쳐 소위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특정 소위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

제20조(표창)

- ① 조합은 부모일일교사, 터전청소 등 조합의 운영 및 발전에 공헌을 한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 ② 표창의 종류는 상금, 상품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징계)

-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원에게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주의를 준다.
 1. 총회 불참 시
 2. 총회 이외의 회의와 조합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에 연속 2회 불참 시
 3. 부모일일교사, 청소에 연속 2회 불참 시
- ② 조합원이 2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개선의 징후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조합원 제명의 건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③ 다음의 경우에 1인당 벌금을 부과한다.
 1. 총회 불참 시 : 2만원
 2. 총회 지각 시 : 30분까지 2000원, 30분~1시간까지 5000원, 1시간 이후 만원
 3. 월례회 및 기타 조합원교육 등 불참 시 : 만원 단, 생업 등의 이유로 장기간 계속 불참할 수밖에 없는 가구를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대체 아마활동을 부과하고 해당 벌금의 50% 까지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4. 총회 회의시간 1/2 이하 참석 시 불참으로 간주하며, 이사장이 공지한 총회소집공고의 회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012. 3. 11 개정>
 5. 원아의 등원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한달 간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가 있을시 총회벌금을 면제한다. <2018. 3. 31. 개정>

제6장 보칙

제22조(기타사항)

- ① 1년에 1회 조합원 정기야유회를 가지며 그 시기와 장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② 조합원이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영구터전마련기금, 시설관리기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 ③ 조합전체 모임 시 회비가 있는 경우는 조합원 전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경기남부 연합 교사회를 달팽이 터전에서 진행 시 조합에서는 교사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도시락(교사회에서 주문)을 지원한다.<2019.9.28 개정>
- ⑤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1차 운영규정 개정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9일부로 제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제2차 운영규정 개정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0일부로 제2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 (제3차 운영규정 개정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로 제3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 (제4차 운영규정 개정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24일부로 제4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 (제5차 운영규정 개정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1일부로 제17조(징계) 조항을 개정한다.

제8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1일부로 제5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제6차 운영규정 개정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5일부로 제8조(가입비와 조합비 및 보육료) 조항을 개정한다.

제10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5일부로 제6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 (제7차 운영규정 개정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로 제1조(교사) 조항을 개정한다.

제1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로 제7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 (제8차 운영규정 개정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20일부로 제8조를 개정한다.

제1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20일부로 제8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5조 (제9차 운영규정 개정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30일부로 제8조(CCTV 설치·운영) 조항을 추가 개정한다

제16조 (시행일) 이규정은 2016년 1월 30일부로 제9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7조 (제10차 운영규정개정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15일 부로 제16조, 제17조(탈퇴) 조항을 추가 개정한다.

제28조 (시행일) 이규정은 2016년 10월 15일부로 제10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재20조 (시행일) 이규정은 2018년 3월 31일부로 제1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6일부로 제12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6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5일부로 제13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7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9월 28일부로 제14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별첨. 차등보육료 시행규정

차등보육료 제도 시행규정

제1조(취지) 차등보육료 제도는 조합원간의 경제적 차이를 뛰어넘어 다차원적 통합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

- 가. 공동육아가 조합원간의 선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 나. 생활에 대한 전적인 부조가 아니라 아이를 함께 키우고자 하는 소박한 뜻으로부터 시작된 나눔과 배려라는 점

제2조(재원마련)

- 가. 차등보육료 제도 시행을 위한 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은 조합원들의 납부금과 외부 기부금을 통하여 조성한다.
- 나. 조합의 가구(보육료 감액가구 포함)는 공동기금으로 매월 가구당 1만원의 의무적으로 납부한다.
- 다. 의무납부금 이외에 경제적 능력에 따른 자율적 신고로 추가로 1-2만원을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추가금의 의무납부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3조(보육료 감액대상)

- 가. 가구 전체소득이 년 2천만원 이하
- 나. 한 부모 가정
- 다. 부모가 모두, 또는 한쪽이 실직, 부도,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 라. 부모가 모두, 또는 한쪽이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마. 기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신규 조합원 포함)

제4조(적용방법)

- 가. 보육료 감액을 원하는 조합원은 감액이 필요한 사유 및 원하는 감액비율과 기간을 명시하여 이사장 또는 재정이사에게 감액절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나. 이사회는 신청조합원의 수, 감액 사유와 공동기금 규모를 고려하여 감액비율과 기간을 정하되, 감액비율은 기준 보육료의 최대50%까지, 감액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 다. 이사회는 감액사유의 존재여부, 필요한 지원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원에 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라. 감액기간 중 감액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즉시 지원의 중단을 요청하여야 하고, 감액기간이 지난 후에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 가. 공동기금은 보육료와 함께 고지되고 납부된다.
- 나. 재정이사는 공동기금을 조합의 일상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집행하여야 하고, 공동기금 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한 외부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그 기부금을 조합의

일상회계에 편입할 수 없다.

- 다. 재정이사는 조합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자율신고를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기금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라. 재정이사는 공동기금의 조성 및 사용현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마. 차등보육료제도 운영은 이사회가 담당한다.

제6조(차등보육료 적용 해제)

- 가. 이사회에서는 차등보육료 실시가구에 대해 월별 심의를 거쳐 조합원의 불성실한 태도나 공동육아를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의사가 없을 시에는 실시를 해제할 수 있다.
- 나. 자율적인 기금 조성으로 인해 기금이 고갈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해제 사실을 알린다.
- 다. 해제 시 남은 기금의 청산은 이사회가 그 처분을 결정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1.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07.7.22부터 1차 개정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7.22부터 시행한다.

별첨. 시설관리기금 시행규정

시설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시행규정

제1조(기금의 정의) "시설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원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 졸업가구 등이 달팽이어린이집의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납부한 현금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목적) 시설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시행규정은 수원공동육아협동조합 달팽이어린이 집 터전의 개보수 및 시설관리, 고가의 고정자산 구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적으로 터전을 유지, 관리하고자 마련되었다.

제3조(기금의 재원)

- ① 조합가입 시 1자녀의 경우 50만원, 2자녀 이상일 경우 60만원의 기금을 납부한다.
- ② 시설관리기금으로 사용처를 특정한 기부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① 50만원 이상의 터전의 개보수
- ② 30만원 이상의 고정자산 구입
- ③ 기타 총회에서 승인한 터전시설관리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

-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제4조 각 항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기금의 사용을 결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기금을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먼저 집행하고 추후 총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다.
- ③ 재정이사는 기금의 운영상황을 조합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하며,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해산 및 청산)

- ①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기금을 해산한다.
조합의 파산 및 해산
국가 등 공공단체의 지원 등으로 더 이상 기금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 ②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기금의 청산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7. 20부터 시행한다.